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4-11호

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13 조, 동법 시행령 제 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 조에 따른 「유독물. 관찰물질지정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4-8 호, 2014.3.21)을 다음과 같이 개정 • 고시합니다.

2014. 5. 16. 국립환경과학원장

## 유독물. 관찰물질지정 일부개정

「유독물. 관찰물질지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별표 1 의 "2013-1-682"란 다음에 "2013-1-683"란부터 "2013-1-688"란까지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## [별표 1]

## 유 독 물(제 3 조 관련)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	표시사항(Code)※				
		염류 • 화합물	유해•위 험문구	그림문자	신호어	
2014-1-683	2-클로로-3-트리플루오로메틸피리딘		H301	GHS06	위험	
	[2-Chloro-3-trifluoromethylpyridine;	_	H311	GHS08		
	65753-47-1] 및 이를 25% 이상	_	H319			
	함유한 혼합물질		H373			
2014-1-684	트리스(트리메틸실릴)포스핀[Tris(tr		H250	GHS02	위험	
	imethylsilyl)phosphine;	_	H261	GHS06		
	15573-38-3] 및 이를 1% 이상	_	H330	GHS05		
	함유한 혼합물질		H314			
2014-1-685	심클로센[Symclosene;		H272	GHS03	위험	
	1,3,5-Trichloro-		H302	GHS06		
	1,3,5-triazine-2,4,6(1H,3H,5H)-tr		H330	GHS05		
	ione; 87-90-1] 및 이를 1% 이상		H318	GHS09		
	함유한 혼합물질		H335			
			H400			
			H410			
2014-1-686	트리글리시딜		H301	GHS06	위험	
	이소시아누레이트[Triglycidyl		H331	GHS05		
	isocyanurate;		H318	GHS08		
	1,3,5-Tris(oxiranylmethyl)-		H317			
	1,3,5-triazine-2,4,6(1H,3H,5H)-tr		H340			

	ione; 2451-62-9] 및 이를 0.1%	H373		
	이상 함유한 혼합물질	H412		
2014-1-687	2-옥틸-3(2H)-이소티아졸론[2-Oc	H302	GHS06	위험
	tyl-3(2H)-isothiazolone;	H311	GHS05	
	26530-20-1] 및 이를 1% 이상	H314	GHS08	
	함유한 혼합물질	H318	GHS09	
		H317		
		H341		
		H400		
		H410		
2014-1-688	트로클로센 나트륨[Troclosene	H272	GHS03	위험
	sodium;	H302	GHS06	
	1,3-Dichloro-1,3,5-triazine-2,4,6	H331	GHS09	
	(1H,3H,5H)-trione sodium salt;	H319		
	2893-78-9] 및 이를 25% 이상	H335		
	함유한 혼합물질	H400		
		H410		

※ 표시사항의 그림문자와 유해·위험문구에 대한 Code 는 「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」의 "[별표 2] 그림문자"와 "[별표 3] 제 1 호의 유해·위험문구(H CODE)"를 참조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을 제조, 판매, 보관. 저장,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,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0 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 개월(고유번호 2014-1-683 란 및 2014-1-684 란) 및 5 개월(고유번호 2014-1-685 란부터 2014-1-688 란까지)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.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.